

의안번호	제 73 호
의 결 연 월 일	2010년 월 일 (제296회)

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0년 11월 12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73
----------	----

제출연월일 : 2010년 11월 12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과 업무조정, 근거법령 개정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◆ 조직개편에 따른 변동사항 정비 : 6건
- ◆ 관련법령 등 정비 : 2건

가. 조직개편에 따른 변동사항 정비 : 6건

- 부서명칭 변경 등 3건 : 일자리창출과(신설), 미래산업과(변경), 기업유치지원과(변경)
- 업무조정(이관) 등 3건
 - 기능경기대회에 관한 사무 : 생활경제과 → 일자리창출과
 - 맞춤형 인턴제 운영 사무 : 생활경제과 → 일자리창출과
 -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: 기업지원과(구) → 기업유치지원과

나. 관련법령 등 정비 : 2건

- 근거법령 개정 : 1건 (민속공예산업 육성)
 -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→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로 분리됨
- 자구수정 : 1건 (정보화담당관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대비표 : 해당없음

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민간위탁사무(제4조3항관련)

대상실과	일련 번호	위탁대상 사무명	위탁대상 기관	근거 및 적용법규
성과관리 담당관	1	○ Happy Call센터 운영사무	콜센터 구축 및 운영대행 전문기관	지방자치법 제104조
정보화 담당관	2	○ 인터넷 방송사업에 관한 사항 - 인터넷방송시스템 구축 및 운영 - 영상콘텐츠 제작·공급 - 도정실황 입체적인 영상홍보 - 그 밖에 인터넷방송에 필요한 사항 등	(재단법인) 충청북도 지식산업진흥원	지방자치법 제104조
일자리 창출과	3	○ 기능경기대회에 관한 다음 사무 - 지방기능경기대회의 개최 -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 대한 상금 지급 - 지방기능경기대회중 부정 행위자에 대한 제재 - 전국기능경기대회 훈련·참가 및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	한국산업인력공단 충북지사	기능장려법 제11조, 제13조, 제15조, 제22조 같은법 시행령 제36조
	4	○ 맞춤형 인턴제 운영 사무	충청북도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	지방자치법 제104조
미래 산업과	5	○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 - 충북과학기술 혁신대전	과학기술관련법인	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, 제56조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제3항
	6	○ 민속공예산업 육성사무 - 도 공예품경진대회	도내 공예단체 및 법인	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
기업유치 지원과	7	○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사무 - 중소기업우수상품전 개최	청주상공회의소,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충북지회	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, 제56조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제3항
	8	○ 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 (다만, 오창과학산업단지는 임대사무를 포함한다)	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 협의회	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, 제31조, 같은법 시행령 제 50

관련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 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□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

제62조(민속공예산업에 대한 지원)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속공예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

□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54조(민속공예산업의 지원) 중소기업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2조에 따라 관할 지역의 민속공예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
2. 제품의 판로 확보
3. 제품 개발, 품질 향상 및 개발된 제품의 상품화